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및 장제보조비 인상 등〉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86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3
2. 장제보조비 지급액 인상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7인
2. 제안일 : 2024. 8. 1.
3. 회부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⑦ (생략) <u><신설></u>	제6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42만원씩 지급¹⁾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인원은 2024년 9월 기준 총 114,195명임.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가 곤란한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참전에 따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본인에게 지급²⁾하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직무 수행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³⁾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어도 비교적 경미한 등급인 상이 7급에 대해서는 유족 보상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참전명예수당처럼 신체적 희생 없이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경우도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3) 현행 보훈보상제도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예: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이 갖는 보상수급권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따라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부칙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이 법 시행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법 시행 전 사망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4,4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7급 상이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우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4) 국가보훈부는 향후 5년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5년간 3,442억원), 7급 상이자 배우자(5년간 1,181억원), 무공수훈자 배우자(5년간 381억원) 등 총 5,0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개정안(배우자 승계)에 따른 재정소요>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인원 발생	① 참전유공자 인원(명)	108,621	98,355	89,059	80,642	73,021
	② 참전유공자 사망인원(명)	10,266	9,296	8,417	7,621	6,901
	③ 연도별 미망인 발생 인원(명)	7,402	6,702	6,069	5,495	4,976
소요 예산	④ 연도별 미망인 발생 인원 누계	7,402	13,504	18,479	22,477	25,632
	⑤ 단가 (‘24년 참전명예수당 단가, 천원,)	420	420	420	420	420
	⑥ 소요예산 (④×⑤×12,백만원)	37,306	68,060	93,134	113,284	129,185

* 참전유공자 인원은 '24~'28년 중기계획 인원 적용, 배우자 생존율 72.1%, 배우자 사망률 8.1% 적용

** 미망인 추계 산식 = {기사망 참전배우자 - (기사망 참전배우자×사망률)} + 당해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승계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으로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함’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서 수당을 승계하는 것은 현행 보상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장제보조비 지급액 인상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생 략)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u>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⑤·⑥ (생 략)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로 지급한다. <단서 삭제></u> ⑤·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제보조비 지급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는 1997년 ‘참전군인 등 장제지원 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목적으로 10만원이 최초 지원되었고, 이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었으며, 2002년 15만원 및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 그러나,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행 장제보조비(20만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이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장제보조비 지급액을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이를 법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장제보조비가 252만원⁵⁾이 되는데, 이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112만원 ~ 170만원)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묘비제작비⁶⁾(100만원)보다 많아지므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

5) 현행 참전명예수당(42만원) 기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6. ~ 7. (생 략)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보훈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둘째, 법률에서 직접 장제보조비 지급액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훈급여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는 경제상황 등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을 것임.⁷⁾

□ 셋째, 개정안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평균 2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사망일시금 및 묘비제작비 인상 등 타 보훈대상자들의 ‘사망 후 지원’ 상향 요구로 이어질 경우 재정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장제보조비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참전유공자 인원(명)	108,621	98,355	89,059	80,642	73,021
㉠장제보조비 지급 건수(명) (참전유공자 사망인원)	10,266	9,296	8,417	7,621	6,901
㉡장제보조비 단가(천원)	2,520	2,520	2,520	2,520	2,520
총지급액(백만원, ㉠×㉡)	25,870	23,426	21,211	19,205	17,391

자료 : 국가보훈부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률 및 「기초연금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낮은 현행 장제보조비의 인상 필요성과 형평성 논란, 지급액의 탄력적인 조정 필요성 및 타 보훈 대상자의 지원 확대 요구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체적 희생 및 공헌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한다는 보훈보상의 원칙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별도로 지원⁸⁾하고 있는 점, 타 보훈대상자로부터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